

도의회 이야기

Tokyo Metropolitan Assembly





본회의장

시작하며

전 세계에 미증유의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 사태는 일본의 공중위생 및 보건 의료체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활동의 모든 측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쿄는 이러한 위기로 인해 부각된 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한 극복을 포함하여 방재와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 변동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도민의 생활 보호를 위한 고물가 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도쿄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가속도적인 보급에 수반되는 사회 및 경제 구조의 전환 등 시대의 모든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면서 도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여 도쿄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야 합니다.

이 같은 배경 아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것은 한층 더 진전된 지방분권을 목표로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자립적인 행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과 더불어 이원대표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무겁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쿄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맡겨 주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쿄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과 대등한 입장으로 진지한 토론을 나누며 다른 관점에서 때로는 한 걸음씩 착실하게, 때로는 크게 비약하며 도쿄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 례

I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도의회	4
1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와 의회	4
2 도의회와 도지사	4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4
II 도의회의 기능	6
1 역사.....	6
2 의회 조직	7
(1) 의원	7
(2) 의장과 부의장	10
(3) 회파(정당)	10
3 의회의 권한	10
(1) 의결권	10
(2) 선거권(의장, 부의장, 선거관리위원) 및 동의권	11
(3) 검사, 감사청구권	11
(4) 조사권	12
(5) 의견서 제출권	12
(6) 지사에 대한 불신임 의결	12
4 의회의 운영	12
(1) 정례회, 임시회	12
(2) 본회의	12
(3) 위원회	13
(4) 의안의 성립과정	15
(5) 회의 운영상의 원칙	16
★도의회 칼럼① ‘의원대표제의 상징에 대하여’	18
III 의회와 집행기관	19
★도의회 칼럼② ‘도의회와 정수장과의 관계’	21

IV	도민과 의회	22
1	도의회 의원을 선출할 권리	23
2	직접청구권	23
	(1)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23
	(2) 의회의 해산청구	23
	(3) 의원의 해직청구	23
3	공청회	25
4	청원 및 진정	25
5	의회의 방청	25
6	홍보	26
7	정보공개제도	26
V	도의회와 국제교류	27
1	우호도시와의 의회간 교류	27
2	해외 조사파견	28
3	외국 주요인사의 도의회 방문	28
	★도의회 칼럼③ ‘도의회 예술전’	29
VI	사무국	30
	참고	31
	의장배치도	32

I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와 도의회

1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와 의회

일본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어 약 80년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주권자인 주민을 기초로 한 자치제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개혁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본문에 ‘지방자치’의 장을 두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이라는 광역 지방공공단체와 ‘시정촌(市町村)’이라는 기초 지방자치체로 구성된 이중제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모든 지역은 어느 한 쪽의 도도부현에 포함되는 것과 동시에 어느 한 쪽의 시정촌에도 포함되어 있다.

도쿄도는 다른 도부현(道府縣)처럼 광역 지방공공단체이지만 다른 곳에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의 하나로 ‘특별구’(주1)라 하는 23개의 특별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도쿄도는 시정촌에 대해서는 도부현(道府縣)과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대도시 행정의 일체적, 효율적 운영을 꾀하기 위해 23개 특별구가 존재하는 구역에서는 ‘시’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수도로서의 특별한 역할도 가지고 있다.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은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의회)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도의 경우, ‘도의회’와 ‘도지사’가 이에 해당된다.

2 도의회와 도지사

도의회는 구성원인 도의회 의원과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는 모두 도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도의회와 도지사는 각자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히 구별되며 ‘수레의 양쪽 바퀴’로 비유되듯 서로가 독립적인 입장에 있다. 또한 상호간의 견제와 조화를 통하여 공정한 행정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이원대표제라고 한다.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정을 추진하는 주체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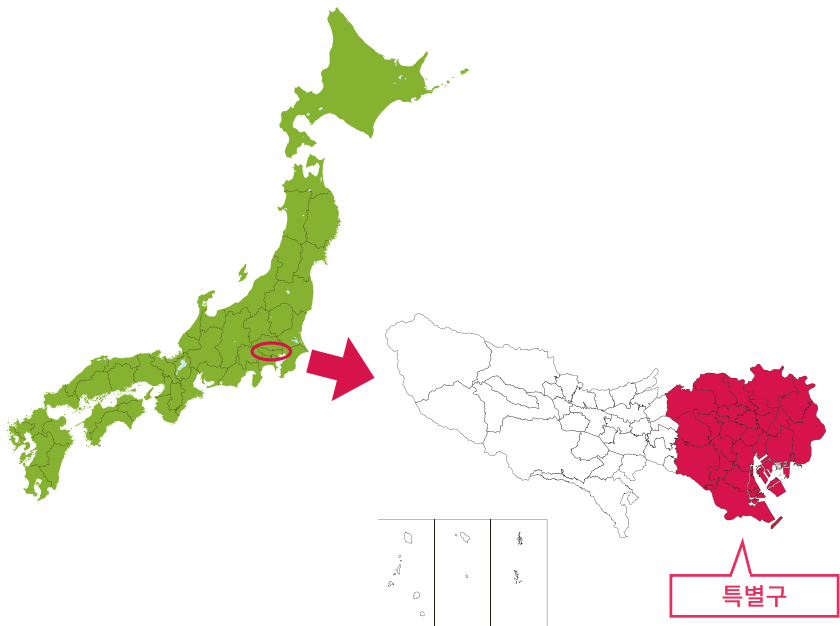
의무가 정의되어 있다.

도민은 도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도가 행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수익과 부담능력에 따라 도세, 분담금 등의 공과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도민은 도의 행정에 참가할 권리(참정권)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도민은 각종 직접 청구권(도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권리, 도의회의 해산 청구권, 도의회 의원과 도지사 등의 해직 청구권, 도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사 청구권 등)을 가진다. 도정에 대한 희망사항 등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원, 진정 등도 도민의 권리로 인정 받는다.

도의회는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도쿄도라는 지방공공단체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한다. 약 1,400만명의 도민을 대신해 도민의 희망사항과 의견을 수렴, 도의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도의회의 기본적 사명이다.

(주1) 특별구란 도에만 설치된 지방공공단체의 하나로 ‘시’에 가까운 성격과 기능을 가진 특별지방공공단체를 말한다.



II 도의회의 기능

1 역사

도쿄도의회는 도쿄부와 도쿄시가 1943년에 합병되어 도쿄도가 생기면서 같은 해에 탄생했다. 도쿄도의회가 현재와 같은 기능을 가진 지방공공단체의 입법기관으로 자리잡은 것은 현재의 일본국 헌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47년 5월부터이다.

그 당시 도쿄도의회에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의원의 의안제출권 및 도의 사무에 대한 조사권 등의 부여)가 정비되었다. 그 후에도 몇 차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의회 제도가 점차 정비되었다.



도쿄도의회 의사당



의회와 집행기관

2 의회 조직

(1) 의원

도의회는 도민의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의원 선거

도쿄도에는 42개 선거구가 있으며, 인구에 비례하여 하나의 선거구당 1~8 명의 도의회 의원이 선출된다.

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일본 국민일 것
- 만 25세 이상일 것
- 도내에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집행을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에 있는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을 위반한 사람도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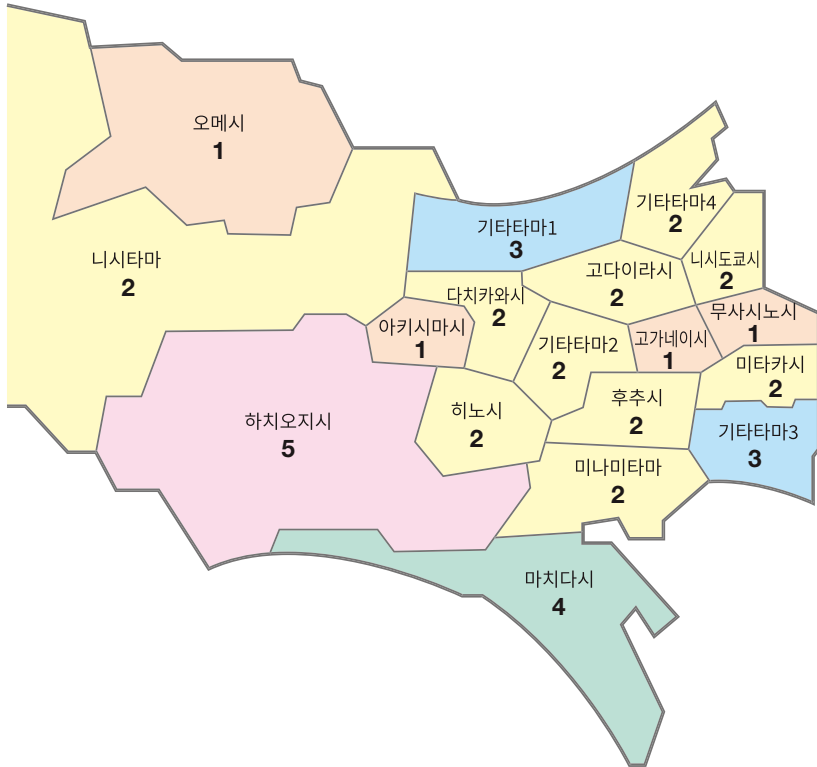
(b) 의원 정수 및 임기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는,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다.

도의회 의원의 정수는 127명, 임기는 4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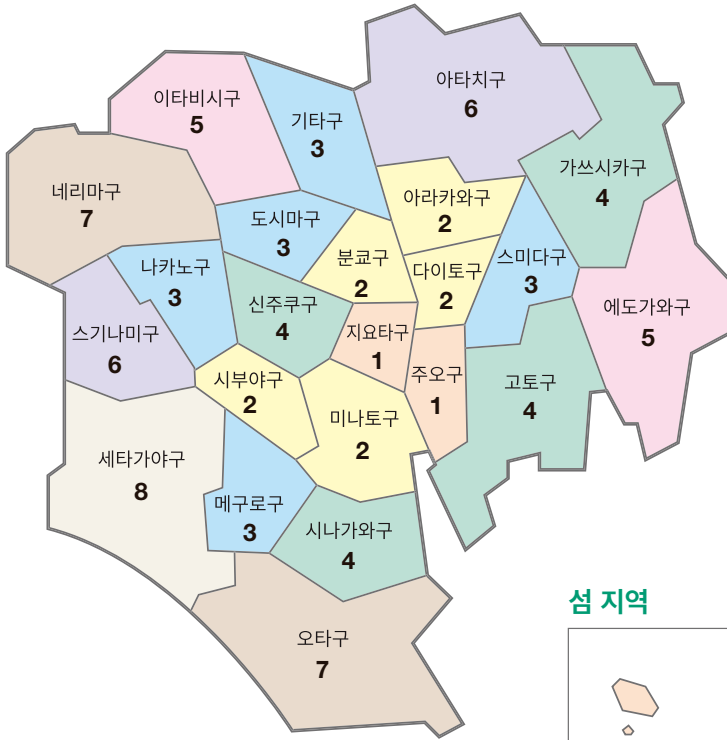
도쿄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및 각 선거구의 의원수
(2020년 7월 개정)

다 마 지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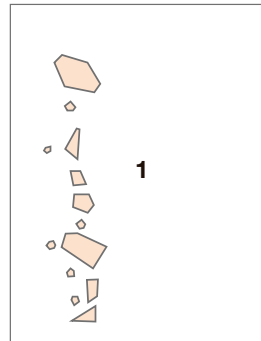


	선거구 수	의원정수
23특별구	23	87
다마지역	18	39
섬 지역	1	1
합 계	42	127

특별구



섬 지역



(2) 의장과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각각 한 명씩 선출된다.

의장은 대외적으로 도의회를 대표함과 동시에 도의회의 주재자로서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며 의장의 질서유지를 꾀한다. 또한 의회의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의회에 관한 사무처리에 임한다. 부의장은 의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또는 의장이 결석하였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의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3) 회파 (정당)

정치상의 이념이나 정책을 같이하는 의원이 모여 정치활동을 할 목적으로 의회에 회파 신고서를 제출한 단체를 원칙적으로 ‘회파’라 한다. 도의회에서는 국회와 같이, ‘회파’를 중심으로 의회활동이 이루어진다. 의원은 원칙적으로 어느 하나의 회파에 소속되어 있으며, 제출된 의안 등에 대한 찬반은 각 회파별로 결론이 도출된다.

3 의회의 권한

도의회는 도교도라는 지방공공단체의 의결기관이며 도교도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의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의결권은 도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이며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사는 도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의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열거되어 있다.

대표적인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조례’는 ‘도교도의 (지역 내)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것도 있다. 또한 도영 지하철과 버스 승차요금, 여러 자금의 대부제도도 조례로 정해져 있다.

(b) 예산 결정

‘예산’은 연간 수입과 지출의 견적이다. 도지사가 예산을 제출하고, 이 예산이 의결되어야 비로소 각종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c) 조례로 정해진 중요한 계약의 체결

예를 들어 도쿄도가 체결하는 계약 중 예정가격 9억엔 이상인 공사 및 제조의 청부계약 등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의결

(2) 선거권 (의장, 부의장, 선거관리위원) 및 동의권

의회는 의장, 부의장과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를 실시한다. 또한 지사가 임명하는 주요 인사 (부지사,公安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등) 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다.

(3) 검사, 감사청구권

의회는 도의 사무 집행에 대하여 다음 방법으로 검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

- (a) 도의 사무에 관한 서류 및 계산서를 검열하고, 도지사 기타 집행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구
- (b) 감사청구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4) 조사권

의회는 도의 사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선거인 기타 관계인의 출두, 증언 및 기록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어 ‘100조 조사권’이라 불리며 조사에는 강제력이 있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조항 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관계인은 의회로부터 조사 목적으로 출두 및 증언을 요청받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경우 의회가 고발하여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5) 의견서 제출권

의회는 도민생활이 크게 관여된 사항에 대해 국회 또는 관계 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지사에 대한 불신임 의결

의회와 지사는 각각 독립된 입장으로 균형을 맞추며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양자의 대립이 격화되어, 의회와 지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최종수단으로써 의회는 지사에 대하여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불신임이 의결되면 지사는 대항수단으로써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하지 않았을 경우 지사는 자동적으로 그 직을 잃게 된다.

4 의회의 운영

(1) 정례회, 임시회

도의회는 연 4회 (2월, 6월, 9월, 12월) 에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것을 ‘정례회’라고 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약 30일 (예산을 심의하는 정례회는 약 60일) 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열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임시회’라 한다.

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지사의 권한이다. 단,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의원, 또는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청구가 있을 경우, 지사는 청구가 있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열리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한다. 본회의에서는 의회

에 제출된 의안과 의회로서의 의견표명 등의 가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회의는 소집된 날 의장의 선고로 개회된다. (원칙적으로 의원 정수 반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를 진행한다,



본회의

(3) 위원회

의회에서는 한정된 회기 중에 광범위 또는 많은 의안이나 청원, 진정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회의의 의결에 앞서 전문적이고 상세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a) 상임위원회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로, 각각의 소관사항을 심사한다.

도의회에서는 현재 조례에 따라 다음의 9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의원은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 | | |
|------------|--------------|
| 1) 총무위원회 | 6) 경제, 향만위원회 |
| 2) 재정위원회 | 7) 환경, 건설위원회 |
| 3) 문화위원회 | 8) 공영기업위원회 |
| 4) 도시정비위원회 | 9) 경찰, 소방위원회 |
| 5) 후생위원회 | |



상임위원회

(b) 특별위원회

특정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예산의 심사를 목적으로 한 예산 특별위원회나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각 회계결산 특별위원회 및 공영기업회계결산 특별위원회는 매년 설치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예산특별위원회실

(c) 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각 회파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운영위원회실

(4) 의안의 성립과정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상정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본회의에 의안 제출

의안의 제출권은 지사와 의원, 그리고 위원회에 있다.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경우는 의견서 등을 제외하고 의원정수 12분의 1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안제출자는 본회의에서 의안 내용과 제안한 이유를 설명한다.

(b) 위원회에서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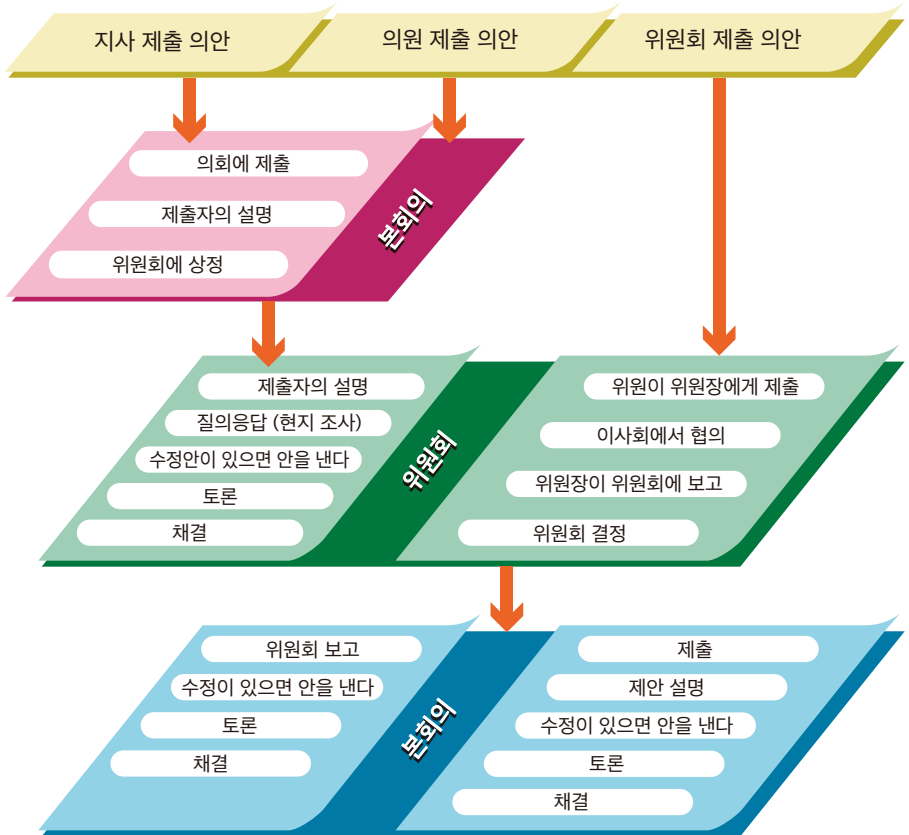
의안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단, 특별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면, 위원장이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한다.

(c) 본회에서 의결

위원장이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를 개최한다.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로 의안이 의결된다. 그 결과 가결되면 의안이 성립된다.

의안의 성립과정(그림)



(5) 회의 운영상의 원칙

의회에는 회의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가지 원칙이 있다.

(a)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란 회의를 개최하거나, 의결하는데 필요한 출석의원의 수를 말한다. 통상 의원정수는 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의결은 무효이다.

(b) 과반수의 원칙

의사는 원칙적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의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지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c) 회의공개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공개라는 것은 방청, 회의기록의 공표 및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외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되었을 때는 비밀회의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 도의회에서는 본회의, 위원회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d) 회의 불계속의 원칙

의회는 각 회기별로 독립하여 활동한다. 그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회기의 종료와 함께 소멸된다. 예외로 의결에 따라 회기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계속심의회가 인정된다.

(e) 일사부재의의 원칙

의회에서 의결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도의회 칼럼 1

‘이원대표제의 상징에 대하여’

도쿄도의회 본회의장의 의장석 위쪽에 있는 둥근 창과 도쿄도청 제 1본청사의 지사실에 있는 둥근 창은 같은 크기로 같은 높이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도쿄도의회와 도쿄도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며 대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원대표제 (P4참조) 를 상징하는 것이다



도쿄도의회와...



도쿄도노...

독립·대등 !



도의회의 둥근 창은 ‘오닉스 마블’ 이라는 귀한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크기가 무려 지름3M나 된다고 해!



III 의회와 집행기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 (주1) 와 수장제 (대통령제) (주2) 가 있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지만, 도쿄도를 비롯하여 지방공공단체는 수장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공정한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견지에서, 상호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음과 같은 권한이 양쪽에 부여되어 있다.



집행기관 (도쿄도청)

- 1 의회는 지사가 제출한 의안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
- 2 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사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3 의회의 의결 및 선거가 의회의 권한을 넘거나 또는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사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4 의회가 의무적 경비 지출의 삭제 또는 감액을 의결하여, 재의를 하여도 그 의결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지사는 원안대로 집행할 수 있다.

5 의회가 재해복구를 위한 경비 또는 감염증 예방을 위한 경비의 삭제 또는 감액을 의결한 경우, 지사는 재의를 요구하고, 의결 결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지사에 대한 불신임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6 전술한 (II-3-(6)) 대로 지사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7 의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특히 긴급한 경우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명확할 경우, 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안건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 지사는 의회를 대신하여 그 의결하여야 할 안건을 처분할 수 있다 (전결처분) .

이 경우, 지사는 다음 회기에서 그 처분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1) 의원내각제: 집행기관은 주민의 대표회의에 의하여 선임되고, 의회의 신임을 그 위임 및 재임의 요건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체제
- (주2) 수장제 (대통령제) : 회의와 집행기관이 서로 직접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어, 각각 직무권한에 임하여 각각이 직접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체제

‘도의회와 정수장과의 관계’

도쿄도의회 의사당과 도쿄도청이 있는 니시신주쿠 지역에는 옛날에 ‘요도바시 정수장’이라는 도쿄도의 정수장이 있었습니다.

1965년에 요도바시 정수장이 폐지되자 1970년대 이후 초고층 빌딩 이 건설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도청 및 도의회 의사당이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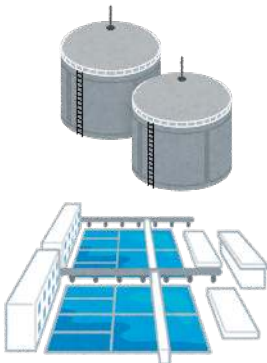


(1990년대)

현재 도의회와 도청을 잇는 ‘도민 광장’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는 등 도민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민 광장에서는 빗물을 모아 도청 청사 안의 화장실용 배수와 식물 재배용 물로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에 이 지역이 정수장이었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민광장장

IV 도민과 의회

도쿄도의 단체로서의 의사는 도의회가 결정한다. 이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도지사는 각종 시책을 강구한다.

도정은 궁극적으로 도민이 운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도민에 의하여 선출된 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와 도지사가 도민으로부터 신탁받은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다.

도민과 도지사의 관계는 제도상, 다음 도민의 권리로 요약할 수 있다.



1 도의회 의원을 선출할 권리

도민이 도의회 의원을 선거할 권리는 만 18세 이상이 된다.

2 직접청구권

도쿄도의 행정은 기본적으로 도의회와 도지사 양자에 의한 간접민주제 방식이 채용되어 있다. 간접민주제를 보완하여 도민의 자치권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제 방식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 도민의 직접청구일람표 참조)

직접청구권 중 의회와 관련된 것으로는 (1)조례 제정, 폐지, (2)의회의 해산, (3)의원 해직이 있다. 이 직접청구들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 도민이다. 권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조례의 제정·폐지 청구

도민은 조례의 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유효한 직접청구가 행사되었을 경우, 의회는 그 조례안을 의결한다.

(2) 의회의 해산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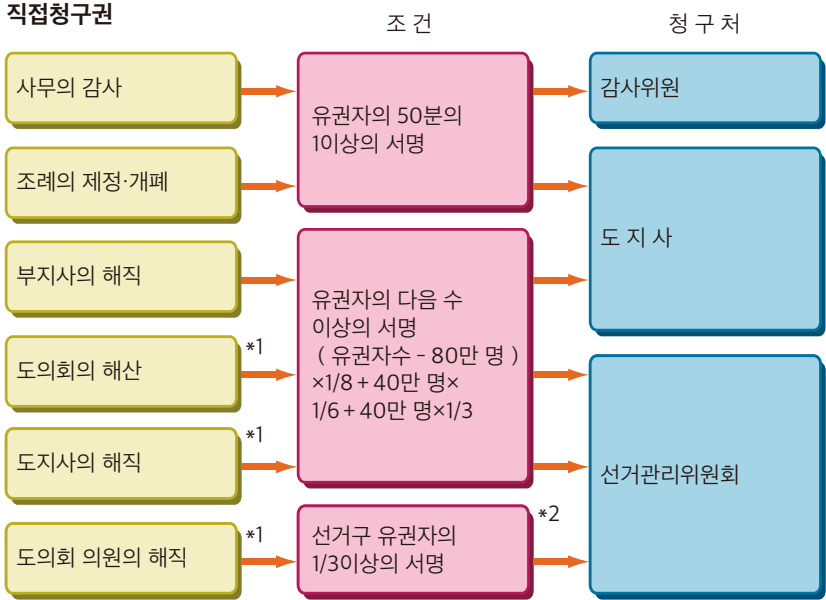
의회의 해산청구권의 주요 목적은 도민이 의회의 해산 자체를 기대하고 있다기 보다는 공정한 의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활동을 감시한다는 점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도의회 의원의 일반선거가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청구할 수 없다), 서명수의 조건도 엄격하다. 의회의 해산에 대하여 조건을 충족한 청구가 행사된 후에 전체 도의 유권자 투표가 실시된다. 그 외에 지사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불신임이 의결된 경우의 대항수단으로,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3) 의원의 해직청구

도민에는 해당선거구의 도의회 의원의 해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 때는 해당의원의 선거구 유권자에 의한 투표가 실시된다.

도민의 직접청구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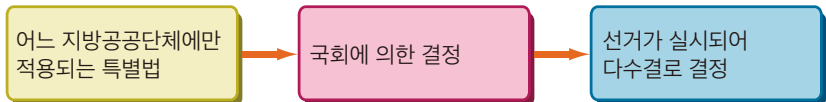


*1 는 선거에 회부되어 다수결로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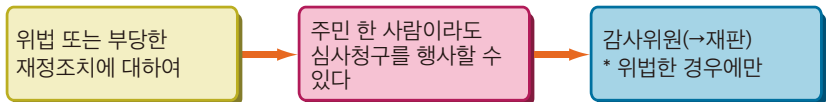
*2 단, 유권자가 80만명을 넘는 선거구는
 (유권자 수 - 80만명) $\times 1/8 + 40만명 \times 1/6 + 40만명 \times 1/3$ 이상의 서명,
 40만명 이상 80만명 이하인 선거구는
 (유권자 수 - 40만명) $\times 1/6 + 40만명 \times 1/3$ 이상의 서명

기타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소송>



3 공청회

예산 및 기타 중요안건, 청원, 진정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이해 관계인 및 학식경험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제도가 있다. 공청회는 위원회심사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4 청원 및 진정

일본국 헌법 제16조에서는 ‘누구라도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법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기타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라도 그 청구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청원권이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라는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지방 자치법 및 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수리된 청원 및 진정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채택된 청원 중 집행기관이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다. 집행기관측은 의회의 결정에 법률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의를 가지고 결정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의회의 방청

의회심회의 신중 및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또한 의원의 발언을 도민에게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심의는 공개되어 있다.

일본의 지방의회는 본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회 심의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장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는 도민이 감시하는 곳에서 신중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심의를 공개하고 있다. 더욱이 의사록을 발행하여 공표하고 있다. 의사록은 도쿄도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회 도서관



6 홍보

도의회는 제도와 활동상황을 널리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의회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신문,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에 도의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의회 자체의 홍보지 및 포스터 등의 인쇄물을 발행하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인터넷에 의한 정보발신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의회의사당 내의 PR코너에서 도의회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PR 코너

7 정보공개제도

도쿄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열린 도의회’의 실현을 위해 ‘도쿄도의회 정보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1)회의의 공개 (2)정보의 적극적 공개·제공 (3)공문서의 공개를 기본으로 하여 종합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V 도의회와 국제교류

도쿄도의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 도쿄의 의회로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의회활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외국과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쿄도와 자매, 우호도시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도시 의회와의 상호 방문교류이다. 또한 외국의 선진적인 활동을 시찰 조사하고, 의회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의원에 의한 조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1 우호도시와의 의회간 교류

도쿄도는 현재 12개 도시 (주, 현) 와 자매, 우호 도시관계를 맺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도시정책 등의 정보교류와 상호이해 협력을 넓히기 위하여 북경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와 상호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의 자매, 우호도시(현, 주)

	도시 (국명)	체결일
1	뉴욕시 (미국)	1960년 2월 29일
2	북경시 (중국)	1979년 3월 14일
3	파리시 (프랑스)	1982년 7월 14일
4	뉴 사우스웨일즈주 (오스트레일리아)	1984년 5월 9일
5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1988년 9월 3일
6	자카르타특별시 (인도네시아)	1989년 10월 23일
7	상파울로주 (브라질)	1990년 6월 13일
8	카이로현 (이집트)	1990년 10월 23일
9	모스크바시 (러시아)	1991년 7월 16일
10	베를린시 (독일)	1994년 5월 14일
11	로마시 (이탈리아)	1996년 7월 5일
12	런던시 (영국)	2015년 10월 14일

2 해외 조사파견

해외 조사파견의 목적은 도정의 주요과제, 중점시책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는 정책이나 특색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를 방문하여, 각 도시에서 시찰, 조사한 결과를 의회활동에 반영하는데 있다. 조사단은 1967년도부터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3 외국 주요인사의 도의회 방문

자매 우호도시의 시장 및 의장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주요인사가 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의회 의장을 예방할 시에 도의회 본회의장 견학 및 도의회 개요설명이 실시된다.

‘도의회 예술전’

도의회 의사당 및 도청 부지 내에는 방문자가 자 치와 문화의 상징인 도청사를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 도록 일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나 대표적인 외국 작가, 시민 또는 젊은 작가들의 조각이나 부조 등 다양 한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사당 내부에 설치된 작품 (일례)】

작품명	미오Headstream	WAVING FIGURE
작가	다다 미나미 (多田美波)	다테하타 가쿠조 (建畠覚造)
작품 소재	미러 코팅 유리	스테인리스
전시 장소	도의회 의사당 1층 현관 홀 중앙	도의회 의사당 2층 의회 중앙홀 중앙
사진		

도의회와 도청 사이에 있는 도민 광장에도 동상 등의 예술품이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청사의 다양한 아트를 감상하시면서 예술의 향기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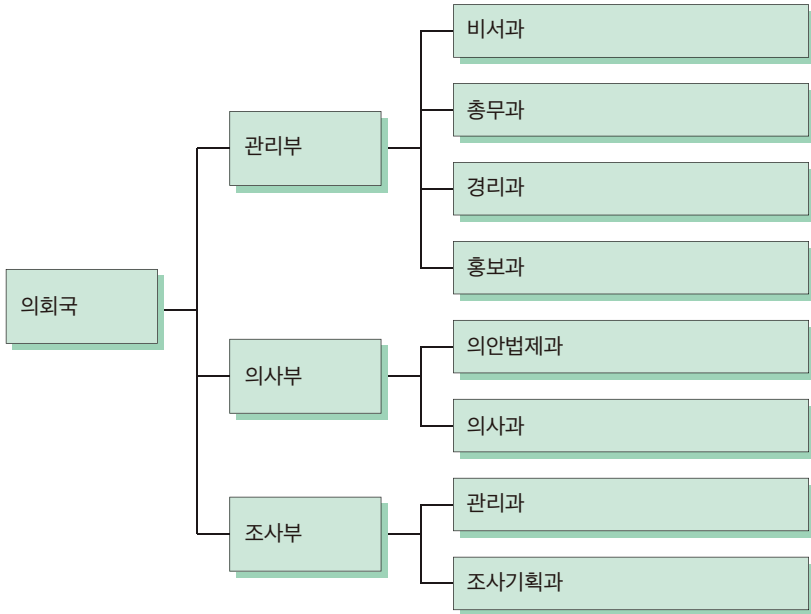
VI 사무국

도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사무국은 의장 아래 국장 이하 3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회의와 위원회의 운영 보조,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도정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은 모두 의장이 임명한다.

사무국 조직은 다음과 같다.

2020년 4월 재편



참 고

일본국 헌법의 지방자치체에 관한 조문

제 92조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 취지에 따라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 93조

지방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지방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의 공무원은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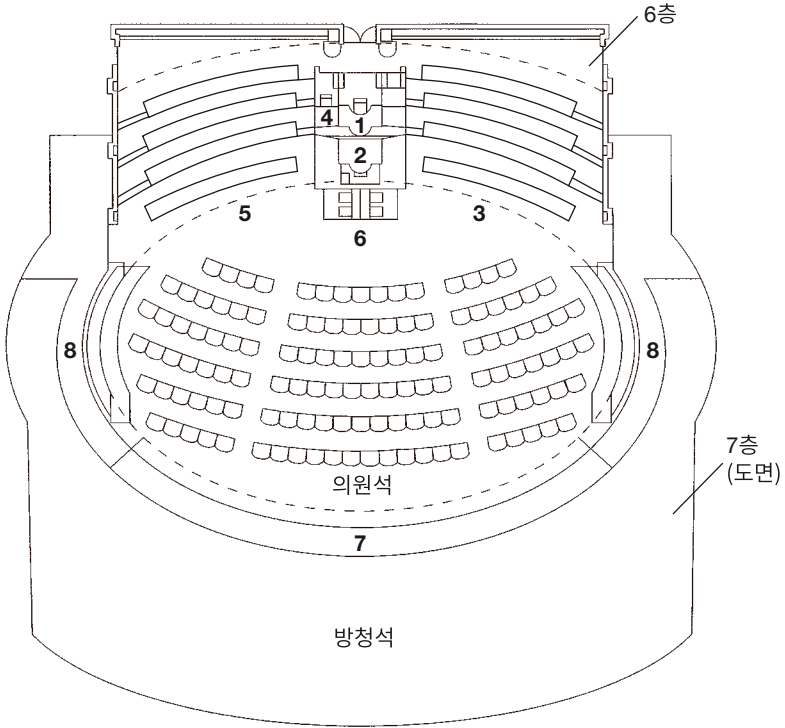
제 94조

지방공공단체는 그 재산 관리, 사무처리, 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 95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투표에 의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국회는 이것을 제정할 수 없다.

의장배치도



1. 의장석
2. 연단
3. 이사석
4. 의회국장석
5. 의회사무국석
6. 속기석
7. 카메라맨석
8. 기자석



도쿄 도의회 의사당 입구



도쿄도의회 의사당 (옥상 녹지화의 모습)



도의회 이야기(한국어 판) 2026년3월 발행

편집·발행 도쿄도의회 의회국 조사부 관리과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니초메8-1
전화 03-5321-1111(대표) 03-5320-7153(직통)

인쇄 주식회사 키타지마
도쿄도 스미다구 다테카와 니초메11-7
전화 03-3635-4510(대표)

東京都議会事務局	
印刷物分類	第1類
印刷物番号	(7) 第4号

도쿄도의회 홈페이지 :

<https://www.gikai.metro.tokyo.lg.jp/foreignlanguage/>



Printed on 70% or more Recycled Paper

